

대 구 지 방 법 원

제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4나8811 손해배상 및 위자료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겸 피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

2. △△△

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 5. 13. 선고 2013가단1568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0. 8.

판 결 선 고 2014. 11. 5.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8,929,338원, 선정자 ◇◇◇에게 50,000,000원, 선정자 ☆☆☆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및 선정자 ◇◇◇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61,771원, 선정자 ◇◇◇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7. 6.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6, 7, 10호증, 을 제1호 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의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경상북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 경상북도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 경상북도 울진교육지원청, 대동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 1) 원고와 ☆☆☆은 선정자 ◇◇◇의 부모이고, 피고들은 ▽▽▽의 부모이다.
- 2) 선정자 ◇◇◇과 ▽▽▽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경북 울진군에 있는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2학년과 3학년 때는 같은 반 학생으로 지냈으며, 선정자 ◇◇◇

◇은 2013. 3. 18.경 대구에 있는 초등학교로 전학하였다.

나. ▽▽▽의 선정자 ◇◇◇에 대한 학교폭력

1) ▽▽▽은 2011년경부터 2012. 6.경까지 선정자 ◇◇◇의 머리와 배 등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선정자 ◇◇◇에게 토끼처럼 깡충깡충 뛰게 시키는 등 선정자 ◇◇◇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는데, 2012. 5. 29.에는 선정자 ◇◇◇에게 '너는 이제 햄스터다. 네발 준비'라고 말하면서 교실 바닥을 기어가도록 시켰고 선정자 ◇◇◇이 이를 거절하자 ▽▽▽은 주먹으로 선정자 ◇◇◇의 배를 때리면서 재차 교실 바닥을 기어가도록 시키기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학교폭력'이라고 한다).

2) ☆☆☆은 2012. 6. 27.경 선정자 ◇◇◇의 담임선생님에게 이 사건 학교폭력사실을 알렸고, 원고는 2012. 7. 2.경 울진경찰서에 이 사건 학교폭력을 신고하였다.

3) ××초등학교는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학교폭력에 대하여 심의를 하였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2012. 9. 7. 이 사건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를 가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므로 ▽▽▽에 대하여 징계를 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

이에 원고는 경상북도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에 위 ××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경상북도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는 2012. 10. 22. '▽▽▽이 행사한 폭력과 행동이 인정되지만 ▽▽▽이 초등학생인 점을 감안하여 ××초등학교 자치위원회 결정에 추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서면사과할 것'을 결정하였다.

다. 선정자 ◇◇◇에 대한 진료경과

1) 선정자 ◇◇◇은 이 사건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별지 2 진료내역 기재와 같이

2013. 1. 15.부터 2013. 6. 22.까지 대구 동구 효목2동 640-1에 있는 대동병원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우울별 에피소드의 병명으로 진료를 받았다.

2) 선정자 ◇◇◇은 2013. 1. 15. 처음 위 대동병원의 신경정신과에 진료를 받으러 가서 '1년 가까이 친구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였고, 학교에서는 계속 기분이 안 좋다'는 취지로 담당자에게 진술하였고, 정신보건 임상심리사는 선정자 ◇◇◇에 대하여 '비교적 상황에 적합하게 판단/대처하거나 심사숙고하여 의사결정/행동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는 정서감에 압도되어 충동적으로 행동하기 쉬운 상태임. 이는 최근 발생한 학교 내 또래 관계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일상적인 장면이나 사소한 자극에 영향을 받아 당시 상황을 재경험하고 있는바, 스트레스가 큰 것으로 보임. 가정 및 학교에서 선정자 ◇◇◇은 보다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지지/공감하면서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이라고 판단하였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은 같은 반 학생인 선정자 ◇◇◇을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괴롭혔는바, 피고들은 ▽▽▽의 부모이자 친권자들로서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인 ▽▽▽을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으므로 민법 제755조, 제753조에 따라 이 사건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선정자 ◇◇◇ 및 선정자 ◇◇◇의 부모인 원고, ☆☆☆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학교폭력의 부존재 주장

피고들은, ▽▽▽이 선정자 ◇◇◇을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괴롭힌 사실이 없고 2012. 5. 29. 선정자 ◇◇◇에게 햄스터처럼 기어보라고 말한 것도 초등학교

교 저학년 학생들이 동물흉내를 내면서 장난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2,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의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경상북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학교폭력 직후 ▽▽▽이 '나와 누구였나 모르겠지만 ◇◇◇에게 기어라고 시켰다. 그 때 ◇◇◇ 표정은 활기찬 표정이었지만 속마음은 좀 우울한 것 같았다. 그래서 내 기분도 웃고는 있었지만 조금 미안했다. 그래서 그만하려고 했는데 몇 몇 아이들이 또 해보라며 또 시키고 또 크게 웃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기도 점, ② 선정자 ◇◇◇이 '2011년 2학년 개학 후 같은 반 ▽▽▽에게 토요일, 일요일, 방학기간을 빼고 하루도 빠짐없이 머리와 어깨와 배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세게 맞았다. 친구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이 너는 이제 햄스터니까 네발 준비하고 교실바닥을 강제로 기게 하였다. 기지 않는다고 하여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주먹으로 배를 때렸다. 이날부터 계속 교실바닥을 기고 기지 않으면 때리면서 지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 ③ ××초등학교 같은 반 학생들이 작성한 진술서에는 '▽▽▽가 ◇◇◇에게 토끼처럼 짹짹 뛰 어보라고 해서 ◇◇◇가 ▽▽▽ 말대로 토끼처럼 짹짹 뛰었다. ◇◇◇는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가 또 ◇◇◇에게 앞구르기를 하라고 해서 ◇◇◇는 앞구르기를 하였다. 며칠 지나서 ▽▽▽는 ◇◇◇에게 서커스를 해보라고 했다. ◇◇◇는 아무말도 하지 않고 계속 했다.', '◇◇◇는 ▽▽▽가 시키는 대로 무조건 다 했다. ▽▽▽가 이리로 오라고 해서 ◇◇◇가 짹짹 가서 친구들이 웃었다.', '▽▽▽가 ◇◇◇보고 다른 친구를 공격해라고 해서 공격을 했다. ◇◇◇가 웃다가 무표정이 되었다.', '▽▽▽가 어느날부터 ◇◇◇에게 서커스를 시키면서 햄스터라고 불렀다. ◇◇◇는 하기 싫어

하는 것 같았지만 즐거운 표정이었다. 한 3~4번 쉬는 시간마다 하는 것 같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도 한 점, ④ 경상북도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는 ▽▽▽이 이 사건 학교폭력행위를 한 것을 인정하고 서면경고를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초등학생으로서의 단순한 장난의 수준을 넘어 선정자 ◇◇◇을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학교폭력과 선정자 ◇◇◇의 정신질환 사이의 인과관계 부존재 주장

피고들은, 선정자 ◇◇◇의 정신질환에 대한 진단일이 2013. 1. 15.이고 이 사건 학교폭력은 2012. 6.경에 종료된 것이어서 시간적으로 상당한 격차가 있으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나 우울증의 발병원인은 매우 다양하여 이 사건 학교폭력과 선정자 ◇◇◇의 정신질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선정자 ◇◇◇은 ▽▽▽으로부터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괴롭힘을 당해 오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학교폭력이 최종적으로 중단된 것은 원고 측에서 ××초등학교에 문제를 제기한 2012. 6. 말경인 것으로 보이고 선정자 ◇◇◇에 대한 진료는 2013. 1. 15.부터 시작되어 약 6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그 6개월 사이에 선정자 ◇◇◇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일을 경험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선정자 ◇◇◇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상으로도 선정자 ◇◇◇의 상태가 이 사건 학교폭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학교폭력과 선정자 ◇◇◇의 정신질환 사이에 인과관계 또한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인 ① 병원진료비 1,624,600원, ② 병원진료를 위한 경비 2,304,738원{경북 울진군에서 대구 소재 대동병원까지 왕복하는데 소비된 유류비 692,397원 및 고속도로 통행료 107,600원 등}, ③ 병원에 동행한 보호자의 인건비 1,465,974원(보통인부 1일 노임 81,443원 × 병원 방문 18회), ④ 선정자 ◇◇◇의 전학으로 인하여 소요된 생활비, 양육비, 주거비 등 5,000,000원, ⑤ 선정자 ◇◇◇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000,000원, 원고 및 ☆☆☆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각 5,000,000원을 배상해야 한다.

나. 판단

1) 병원진료비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학교폭력으로 인한 선정자 ◇◇◇의 정신질환의 치료를 위하여 원고가 별지 2 진료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1,642,600원의 진료비를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들은 위 1,642,6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유류비 및 고속도로 통행료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선정자 ◇◇◇이 별지 2 진료내역 기재와 같이 대동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날 무렵에 원고가 별지 3 고속도로통행료 지출내역 및 별지 4 주유내역 기재와 같이 고속도로통행료와 주유대금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선정자 ◇◇◇이 다니던 학교가 경북 울진군에 있었던 사실, 이 사건 학교폭력으로 인한 정신질환의 진료가 학교폭력이 종료된 후로부터 약 6개월 이상 경과한 후 시작된 사실, 선정자 ◇◇◇은 병원 진료가 시작된 후 2013. 3. 18.경 대구로 전학 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지출한 위 비용들이 모두 이 사건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지출하게 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이 사건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지출하게 된 비용이라 하더라도 이는 선정자 ◇◇◇이 반드시 대구에 있는 병원에 통원을 하며 진료를 받아야 한다거나 미성년자인 선정자 ◇◇◇이 부모와 떨어지게 되어 진료를 위하여 원고가 선정자 ◇◇◇이 있는 곳까지 먼 거리를 왕복하여야 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피고들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들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보호자 인건비에 대한 판단

선정자 ◇◇◇이 별지 2 진료내역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대동병원에 방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대구를 방문한 것이 선정자 ◇◇◇의 진료만을 목적으로 하였던 것으로 보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선정자 ◇◇◇의 병원 진료에 소요된 시간이 보통인부의 1일 근로시간(8시간)에 상응한다거나 원고나 ☆☆☆이 선정자 ◇◇◇을 병원에 데리고 감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입은 손해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설령 그와 같은 손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위 2)항에서 본 바

와 같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인데, 피고들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전학으로 인한 생활비 등

살피건대, 선정자 ◇◇◇의 전학으로 인하여 부모와 함께 살 때보다 500만 원의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손해 역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할 것인데, 피고들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위자료

선정자 ◇◇◇은 이 사건 학교폭력의 피해자로서 원고 및 ☆☆☆은 선정자 ◇◇◇의 부모로써 이 사건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바, 피고들은 원고 및 선정자 ◇◇◇, ☆☆☆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들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선정자 ◇◇◇과 ▽▽▽의 연령, 관계, 이 사건 학교폭력의 정도 및 기간, 선정자 ◇◇◇의 정신질환 및 진료정도, 이 사건 학교폭력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여, 선정자 ◇◇◇에 대한 위자료를 7,000,000원, 원고 및 ☆☆☆에 대한 위자료를 각 2,000,000원으로 정하기로 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부진정 연대하여 원고에게 진료비 및 위자료 합계 3,642,600원 (1,642,600원 + 2,000,000원), 선정자 ◇◇◇에게 위자료 7,000,000원, ☆☆☆에게 위자

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학교폭력이 있는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7. 6.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4. 5.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형한

 판사 김병휘

 판사 박주영

[별지 1]

선정자명단

1. ○○○

2. ◇◇◇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 모 ☆☆☆. 끝.

[별지 2]

진료내역

순번	진료일	진료유형	진료비 총액(원)	원고 부담액(원)
1	2013. 1. 15.	외래	572,504	572,500
2	2013. 1. 26.	외래	69,560	69,560
3	2013. 2. 21.	외래	50,000	50,000
4	2013. 2. 22.	외래	50,000	50,000
5	2013. 3. 2.	외래	50,000	50,000
6	2013. 3. 8.	외래	50,000	50,000
7	2013. 3. 16.	외래	60,000	60,000
8	2013. 3. 23.	외래	60,000	60,000
9	2013. 3. 29.	외래	60,000	60,000
10	2013. 4. 6.	외래	60,000	60,000
11	2013. 4. 13.	외래	60,000	60,000
12	2013. 4. 20.	외래	60,000	60,000
13	2013. 4. 27.	외래	60,000	60,000
14	2013. 5. 4.	외래	95,864	95,860
15	2013. 5. 11.	외래	60,000	60,000
16	2013. 5. 25.	외래	60,000	60,000
17	2013. 6. 15.	외래	60,000	60,000
18	2013. 6. 22.	외래	104,684	104,680
합계			1,642,612	1,642,600

[별지 3]

고속도로 통행료 지출 내역

순번	통행일시	입구영업소	출구영업소	금액(원)
1	2013. 1. 15. 18:48	팔공산	경산	1,600
2	2013. 1. 16. 12:45	경산	팔공산	1,600
3	2013. 2. 23. 15:57	팔공산	포항	4,200
4	2013. 3. 1. 15:50	포항	팔공산	4,200
5	2013. 3. 3. 15:28	팔공산	포항	4,200
6	2013. 3. 8. 16:43	포항	팔공산	4,000
7	2013. 3. 9. 16:03	팔공산	포항	4,200
8	2013. 3. 16. 13:30	포항	팔공산	4,200
9	2013. 3. 17. 16:20	팔공산	포항	4,200
10	2013. 3. 23. 11:36	포항	팔공산	4,200
11	2013. 3. 24. 17:19	팔공산	포항	4,200
12	2013. 3. 30. 17:58	포항	팔공산	4,200
13	2013. 3. 31. 16:48	팔공산	포항	4,200
14	2013. 4. 6. 17:01	포항	팔공산	4,200
15	2013. 4. 7. 16:50	팔공산	포항	4,200
16	2013. 4. 13. 16:26	포항	팔공산	4,200
17	2013. 4. 14. 16:06	팔공산	포항	4,200
18	2013. 4. 20. 15:46	포항	팔공산	4,200
19	2013. 4. 21. 17:32	팔공산	포항	4,200
20	2013. 4. 27. 16:27	포항	팔공산	4,200
21	2013. 4. 28. 17:26	팔공산	포항	4,200
22	2013. 5. 11. 15:40	포항	팔공산	4,200
23	2013. 5. 12. 16:20	팔공산	서포항	3,800
24	2013. 5. 25. 20:42	포항	팔공산	4,200
25	2013. 5. 26. 16:42	팔공산	포항	4,200
26	2013. 6. 15. 13:01	포항	팔공산	4,200
27	2013. 6. 22. 20:31	팔공산	포항	4,200
합계				107,600

[별지 4]

주 유 내 역

순번	주유일시	주유소	1리터당 단가(원)	금액(원)
1	2013. 3. 1.	지에스청하주유소	1,927	50,000
2	2013. 3. 3.	소동주유소	1,937	40,000
3	2013. 3. 16.	지에스청하주유소	1,934	40,000
4	2013. 3. 24.	소동주유소	1,924	70,000
5	2013. 3. 30.	지에스청하주유소	1,924	30,000
6	2013. 4. 6.	유장주유소	1,928	50,000
7	2013. 4. 7.	소동주유소	1,904	60,000
8	2013. 4. 14.	소동주유소	1,899	80,000
9	2013. 4. 21.	소동주유소	1,877	70,000
10	2013. 4. 28.	소동주유소	1,864	60,000
11	2013. 5. 26.	소동주유소	1,844	80,000
12	2013. 6. 15.	지에스청하주유소	1,830	30,000
13	2013. 6. 22.	소동주유소	1,847	60,000
합계				720,000